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265
등록일자	2015.2.5.
결재일자	201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구청장
이제상	임경식	김광수	代김용운	주윤중	02/06 신연희
협조자	전산정보과장 공보실장 세입관리팀장	김청호 신연순 이정현	도시계획과장	최주학	

2015년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홍보 계획

홍보 개요

- 기간 : 2015. 2. 4 ~ 6. 30
-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한 전방위적 홍보
- 내용 : 과세체계 변경내용, 신고 · 납부 방법 · 기한, 신고서류 등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사항 위주로 집중홍보

세부 계획

- 대 면 홍 보 :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 납세상담소 운영 · 방문설명회
- 비 대 면 홍 보 : 안내문 발송 · 언론 보도자료 배포
- 온 라 인 홍 보 : 홈페이지 팝업창
- 오프라인 홍보 : 강남구청 뉴스 · 옥외전광판 · 홍보 포스터 부착

기대 효과

- 과세체계 변동에 발맞춰 다양한 홍보로 세정만족도 향상
- 납세자 혼란 최소화 및 지방소득세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2015. 2. .

강 남 구
(세 무 2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세무과-29513(2014.12.31.)호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지방소득세제의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 최소화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예산 사용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납세자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border="0"> <tr> <td>① 관련부서 협조</td> <td>-----</td> <td>()</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td> <td>()</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td> <td>(O)</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td> <td>()</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td> <td>()</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td> <td>()</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td> <td>(O)</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td> <td>()</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td> <td>()</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O)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O)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2015년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홍보 계획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소득세 개편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I 홍보 개요

- 기간 : 2015. 2. 4 ~ 6. 30
-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한 전방위적 홍보
- 내용 : 과세체계 변경내용, 신고 · 납부 방법 · 기한, 신고서류 등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집중홍보

II 추진 방향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 중심의 간결하고 반복적 홍보를 통한 전달효과 극대화
- 대면홍보(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납세상담소 운영, 방문설명회) 및 비대면 홍보(안내문 발송,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병행
- 온라인(홈페이지 팝업창) 및 오프라인(강남구청 뉴스, 옥외전광판) 홍보 병행

III 세부추진계획

1 대면홍보

-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5. 3. 6(금) 14:00 ~ 16:00(예정)
 - 장소 : 구민회관 2층 대강당
 - 대상 : 관내 세무대리인 및 법인

※ 강사(이성태 공인회계사)와 강의내용 등 협의 후 별도 계획 수립

□ **찾아가는 방문설명회 개최**

- 기간 : 2015. 2월 ~ 6월
- 대상 : 중소기업협회 · 소상공인협회, 각 업종별 · 지역별 단체 및 협회
- 방법 : 관내 단체 · 협회의 자체 교육 · 회의시 방문하여 설명회 개최
- 내용 :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및 참석자의 지방세 관련 궁금증
- 설명자 : 지방소득세 부서장 및 팀장(사전조사후 필요시 외부전문가)
- 월별 추진계획 :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2015. 1월	· 각 실 · 과 ·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 · 협회 통해 수요조사 - 수요 및 일정, 문의내용 등 사전조사	
2015. 2월	***** ***** ***** *****	부동산정보과
2015. 3월	***** ***** ***** *****	청담동
2015. 4월	***** ***** ***** *****	일자리정책과
2015. 2~6월	· 인구 및 법인 많은 동 위주로 직능단체 회의시 일정 협의 후 추진 ※단체 · 협회 · 법인 등에서 교육요청시 수시 교육실시	

□ **납세상담소 운영**

- 기간
 - 1차 : 2015. 4. 10 ~ 4. 30(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 2차 : 2015. 5. 10 ~ 5. 31(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 장소 : 세무2과 민원창구
- 운영방안 : 지방소득세팀 직원 순번제

- 민원처리대장에 주요상담 내역 기록·관리
- 신고·납부 방법, 필요서류 등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담처리를 위해 **신규직원은 제외**

2 비대면홍보

안내문 발송

- 기간 : 2015. 2. 4 ~ 2. 28
- 대상 : 관내 모든 법인(23,104개)
 - 전년도 국세청 통보자료(법인세분·특별징수분) 전체
 - 법인명부(세무1과 법인관리팀)상의 법인
- 방법 : 우편 발송
- 내용 : 신고서류·방법·기한, 가산세 대상, 법인 공제·감면 배제 등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위주로 요약·정리
- 일자별 추진계획 :
 - 2015. 2월 9일한 대상자 파일 발취
 - 2015. 2월 10일한 대상자 및 안내문안 확정
 - 2015. 2월 12일한 안내문 우편 발송(인쇄업체)
 - 2015. 2월 28일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상담

언론 보도자료 배포

- 보도시기 : 2015. 2월초
- 보도내용 : 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및 세제개편 내용 홍보

3 온라인 통한 홍보 - 전산정보과 협조

- 우리구 홈페이지 통한 홍보
 - 홍보기간 : 2015. 3월 ~ 4월
 - 링크된 주소 클릭시 부서 홈페이지내 “지방세 개편 안내” 로 바로 연결

4 오프라인 통한 홍보 - 공보실

- 강남구청 뉴스 게재
 - 게재시기 : 2015. 2월말
- 옥외전광판 통한 홍보
 - 홍보기간 : 2015. 3월 ~ 4월
- 동주민센터 홍보 포스터 부착

- 기침시기 : 2015. 3월 ~ 4월
- 기침개수 : 22개
- 규 격 : 45×60(단위:cm)

N 소 요 예 산

- 총금액 : 금2,927,540원(금이백구십이만칠천오백사십원)
 - 안내문 발송
 - 금 액 : 금2,564,540원(111원×23,104건)
 - 예산과목 : 세무2과,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 포스터 부착
 - 금 액 : 금363,000원(16,500×22개)
 - 예산과목 : 세무2과,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 부족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

V 기 대 효 과

- 과세체계 변동에 발맞춰 다양한 홍보로 세정만족도 향상
- 납세자 혼란 최소화 및 지방소득세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VI 행 정 사 항

- 강남구청 뉴스, 옥외 전광판, 언론 보도자료 협조 - 공보실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팝업창) - 전산정보과
- 동주민센터 홍보 포스터 부착 - 동주민센터

- 붙임**
1. 안내문(안) 1부
 2. 언론 보도자료(안) 1부
 3. 우리구 홈페이지 홍보문(안) 1부

4. 옥외 전광판 홍보문(안) 1부
5. 동주민센터 홍보 포스터(안) 1부
6. 강남구청 뉴스(안) 1부. 끝.

【붙임1】 안내문(안)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안)

2014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주요개정 사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과세체계		《부가세 방식》 국세결정세액×단일세율10% = 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 국세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국세액	국세 과세표준
세 율		10%(단일세율)	법인세 세율의 10%
공제·감면		국세와 함께 자동감면	공제·감면 없음(과세전환)
신고 납부	신고기한	●확정신고:사업연도 종료일부터4개월 이내 ●수정신고 및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일 및 법인세 납부기한으 로부터 1개월 이내	●확정신고: 기존과 동일 ●수정신고 및 세무서 결정·경정: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1개월 연장 없음)
	신고의무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 신고한 것으로 간주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 가산세 부과(20%)
	신고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외10
특별징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대상: 개인 및 외국법인	●특별징수대상: 개인 및 외국법인, 내국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책자는 [이택스\(etax.seoul.go.kr\)](http://etax.seoul.go.kr) ⇒ 지방세정보 ⇒ 신고서식/기타자료 에서 다운 가능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2과(☎ **【3423-0000】**), **【담당 000】**)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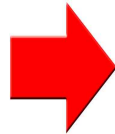
강 남 구 청 장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방식 사례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방식 사례

- 법인명 : (주)강남
- 사업기간 : 2014. 1. 1 ~ 2014.12. 31
- 법인세 과세표준 : 207,671,000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250,000원
- 법인세액 : 21,284,200원
- 계산방식 :

구분	변경 전
과세표준	21,284,200원 (법인세액)
×	
세율	10% (단일세율)
=	
산출세액	2,128,420원 (법인세액의 10%)
-	
공제·감면	반영(25,000원)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
=	
결정세액	2,128,420원



변경 후
207,671,000원 (법인세 과세표준)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법인세 세율의 10%)
2,153,420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공제·감면 없음(0원) ⇒ 과세 전환
2,153,420원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전자신고·납부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홈택스와 유사하게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는 3월부터 가능 예정입니다.

【붙임2】 언론 보도자료(안)

자료제공일 : 2015. 2. .()

이 보도자료는 2015년 2월 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 첨부자료 : 없음
- ▶ 사진자료 : 없음
- ▶ 자료매수 : 2 매

담당부서	세무2과	
과 장	김광수	3423-5690
팀 장	임경식	3423-5711
담 당	이제상	3423-5712

2015년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확인하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실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변경 등 20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 (신고 의무화)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 에 따라 독립세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를 해야 한다.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외국법인은 기시행중)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지급분 부터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국세(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지방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남구는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으로 개정된 사항과 납세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이 정리된 안내홍보물을 제작, 관내 23,000여개 법인에 발송하는 한편, 오는 3월에는 강남구민회관에서 지방소득세 변경사항에 대한 대규모 설명회를 갖는다.

또한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납세자, 단체, 협회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납세자의 혼란 예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3】 우리구 홈페이지 홍보문(안)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2014.1.1. 이후 최초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하는 지방소득세는 개정된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변경내용 : 지방소득세 개정사항(세무2과 부서홈페이지 아래주소 참조)
(<http://www.gangnam.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200>)
- 문의 : 강남구 세무2과 ☎ 3423-5712, 3423-5711~5707

【붙임 4】 옥외 전광판 홍보문(안)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납부 여부 상관 없이 무신고시 **가산세(20%) 부과**
- 신고·납부처 :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사업년도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문의처 : 강남구청 세무2과 (☎02-3423-5712)

【붙임 5】 동주민센터 홍보 포스터(안)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신고·납부 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납 세 의 무 자 : 법인세 납세의무자
- 변 경 내 용 :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
과 세 방 식	· 부가세	· 독립세
과 세 표 준	· 법인세 총 부담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 법인세액의 10%	· 1 ~ 2.2%(국세 세율의 10%)
무신고 가산세	·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세금 납부 여부 관계 없이 신고 없는 경우 가산세(20%) 부과
공제·감면	· (국세와 함께) 자동 공제·감면	· 공제·감면 없음(과세전환)
신고·납부 기한	·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 기존과 동일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1개월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1개월 연장 없음)
	· 경정 및 수정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1개월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1개월 연장 없음)

☎ 강남구청 세무2과 (☎02-3423-5712, 5711~7)

【붙임6】 강남구청 뉴스(안)

자료제공일 : 2015. 2. .()

이 보도자료는 2015년 2월 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 ▶ 첨부자료 : 없음
- ▶ 사진자료 : 없음
- ▶ 자료매수 : 2 매

담당부서	세무2과	
과 장	김광수	3423-5690
팀 장	임경식	3423-5711
담 당	이제상	3423-5712

2015년 지방소득세 이렇게 달라졌어요!

- 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

지방소득세가 그간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이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¹⁾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신고분부터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무서에 국세와 동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7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 법인세와 동시에 공제·감면적용되던 것이 개정된 규정에는 공제·감면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로 전환되었지만,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공제·감면을 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예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1) 참고자료1(지방소득세 주요변경 내용)

【참고자료1】

《지방소득세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과세체계		《부가세 방식》 국세액×10%(단일세율) = 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 국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액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10%(단일세율)	소득세 세율의 10%	
신고 장소	개인지방 소득세	세무서 (소득세와 동시 신고)	기존과 동일 (2016년까지)	2017년부터는 구청에도 신고
	법인지방 소득세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	구청(세무부서) 신고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과
공제 감면	개인지방 소득세	국세와 동일하게 감면	기존과 동일	세부담 증가 없음
	법인지방 소득세	국세와 동일하게 감면	공제감면 없음 (과세전환)	